

1. 제정이유

「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 20100호, 2024. 1. 23. 공포, 2025. 1. 2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(안 제2조)

손상조사통계사업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요청방법을 정함

나.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(안 제3조)

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수행하는 그 밖의 사업을 정하고, 질병관리청장에게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정함

다.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(안 제4조)

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, 설치·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의 목록과 신청서식 및 위탁서 서식 등 위탁 절차 등을 정함

라.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(안 제5조)

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, 그 절차 등을 정함

마. 중앙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(안 제6조)

설치·운영을 위탁한 중앙손상관리센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며,
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

바.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(안 제7조)

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,
설치·운영 위탁 절차 등을 정함

사.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(안 제8조)

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
고, 그 절차 등을 정함

아. 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(안 제9조)

설치·운영을 위탁한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하며,
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생 략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생 략

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) ① 질병관리청장은 「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(이하 “손상조사통계사업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손상환자의 검사·진단·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
(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)
2. 손상환자 또는 손상 발생 관련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
3. 손상 발생에 관련된 자료
4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·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해야 한다.

제3조(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)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“보건복

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 실시 지원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(이하 “지역손상관리센터”라 한다)의 성과관리
3. 「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른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지원
4. 손상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
5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, 재정운용계획 및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(이하 “중앙손상관리센터”라 한다)는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

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2. 인력 운용 현황
3. 사업운용계획서

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의 국가손상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한다. 이 경우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손상관리센터 위탁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

제5조(중앙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)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·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,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2. 제4조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

3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
4.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
을 위탁받은 경우

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③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재위탁을 받지 못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탁
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손상관리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
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6조(중앙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)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
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
우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 및 재위
탁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5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앙손상
관리센터의 재위탁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, 재위탁된
기관에 위탁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
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

제7조(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

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8조(지역손상관리센터의 위탁 취소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

·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,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
3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경우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질병관리청장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.

③ 지역손상관리센터가 재위탁을 받지 못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탁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손상관리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9조(지역손상관리센터의 평가 및 재위탁) ① 영 제16조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 및 재위탁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5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재위탁 여부를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, 재

위탁된 기관에 위탁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해당 지역의 시·도지사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

I. 설치기준

1. 시설기준

- 가. 중앙손상관리센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, 회의실, 교육·세미나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나.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위탁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기관 밖에도 설치할 수 있다.

2. 직제기준

-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장, 부센터장을 두고 연구, 교육·홍보, 협력사업 등을 담당하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3. 인력기준

가. 배치기준

- 1) 중앙손상관리센터장: 1명을 둔다. 다만,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주 2일(16시간)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.
- 2) 부센터장: 상근으로 1명을 둔다.
- 3) 팀장 및 팀원: 각 팀의 실무관리를 총괄하는 팀장 1명을 둘 수 있다. 팀원은 15명 내외로 둘 수 있다.

나. 자격기준

- 1) 중앙손상관리센터장: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손상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진료나 연구 또는 정책 지원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 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
- 2) 부센터장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① 손상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진료나 연구 또는 정책 지원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, 손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- 3) 팀장: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손상 관련 보건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(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)이 있는 사람

II. 운영기준

1.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지역손상관리센터 업무의 총괄·조정 및 기술 제공,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며,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손상관리센터와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.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, 예산·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3.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조직, 인사, 급여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,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
 - 1)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
 - 2) 중앙손상관리센터장, 부센터장, 팀장 및 팀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
 - 3)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4)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

중앙손상관리센터 위탁 신청서

•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기관	명칭	설립일	
	주소	전화번호	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	
담당자	성명	직위	
	전화번호	전자우편 주소	

「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 1부 2. 사업운용계획서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제 호

중앙손상관리센터 위탁서

1. 기 관 명:
2. 대 표 자:
3. 소 재 지:
4. 위탁기간:

위 기관에 「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합니다.

년 월 일

질병관리청장

직인